

고 시

창녕군 고시 제 2024 - 87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창녕군수

- 다 음 -

점 용 자		점 용 위 치			면 적 (㎡)	목 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읍·면	리	지 번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수 (도시건축과장)	부곡	부곡	650-14	61	공작물 설치	2024. 5. 8. ~ 2039. 12. 31.

창녕군 고시 제2024-93호

대합면 모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대합면 모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5. 28.

창녕군수

1. 사업목적

- 지역경관개선사업, 마을인프라 확충을 통한 마을의 정주공간 개선으로 모전마을의 지역특성이 고려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2. 사업내용

가. 위 치: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모전마을 일원

나.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모전게이트볼장 정비, 마을안길포장 정비
- 마을인프라확충: 모전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조리실 및 부대시설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등

3. 사업비: 500백만 원 (균비 500)

4. 사업기간: 2022년~2024년 (3년간)

5. 사업효과: 모전마을의 지역경관개선 및 마을인프라 확충을 통해 마을 경관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6. 사업시행자: 창녕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농촌개발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농촌개발팀 055-530-2106,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055-530-7755)

□ 시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비고
		기승인	금회승인	증(Δ)감	
합 계	500,000	500,000	500,000	-	
【 주민공동시설 】	227,739	227,739	220,664	Δ7,075	
-모전게이트볼장정비	217,983	217,983	192,911	Δ25,072	
-조리실및부대시설정비	9,756	9,756	27,753	17,997	
【 안전위생확보 】	124,105	124,105	131,080	6,975	
-빈집정비	-	-	-	-	
-폐비닐수거장정비	-	-	-	-	
-생활안전시설정비	-	-	-	-	
-마을안길포장정비	124,105	124,105	131,080	6,975	
【 경관시설정비 】	63,998	63,998	67,945	3,947	
-모전저수지수변경관조성	61,133	61,133	65,331	4,198	
-마을진입벽화	-	-	-	-	
-디자인안내판설치	2,865	2,865	2,614	Δ251	
【 주민역량강화 】	20,000	20,000	17,750	Δ2,250	
-소프트웨어	20,000	20,000	17,750	Δ2,250	
□ 제 경 비	64,158	64,158	62,561	Δ1,597	
· 기본 및 세부설계비	20,442	20,442	20,442	-	
· 공사감리비	30,027	30,027	33,491	3,464	
· 사업관리비	6,188	6,188	6,901	713	
· 잡지출	7,501	7,501	-	Δ7,501	
· 재해예방기술지도	-	-	1,727	1,727	

창녕군 고시 제2024-95호

창녕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등의 변경 및 폐지), 시행령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절차) 및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및 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30.

창녕군수

1. 고시일 : 2023. 5. 30.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3건 (붙임 참고)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 (☎055-530-1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폐지)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 변경 조사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 전	모전1길	대합면	모전리 969-1	모전리 1091	40	2	15	18-7→18-17	도로구간 축소·변경
변경 후			모전리 1247	모전리 1247	28.5	2	15	18-7→18-13	



도로구간 변경 조사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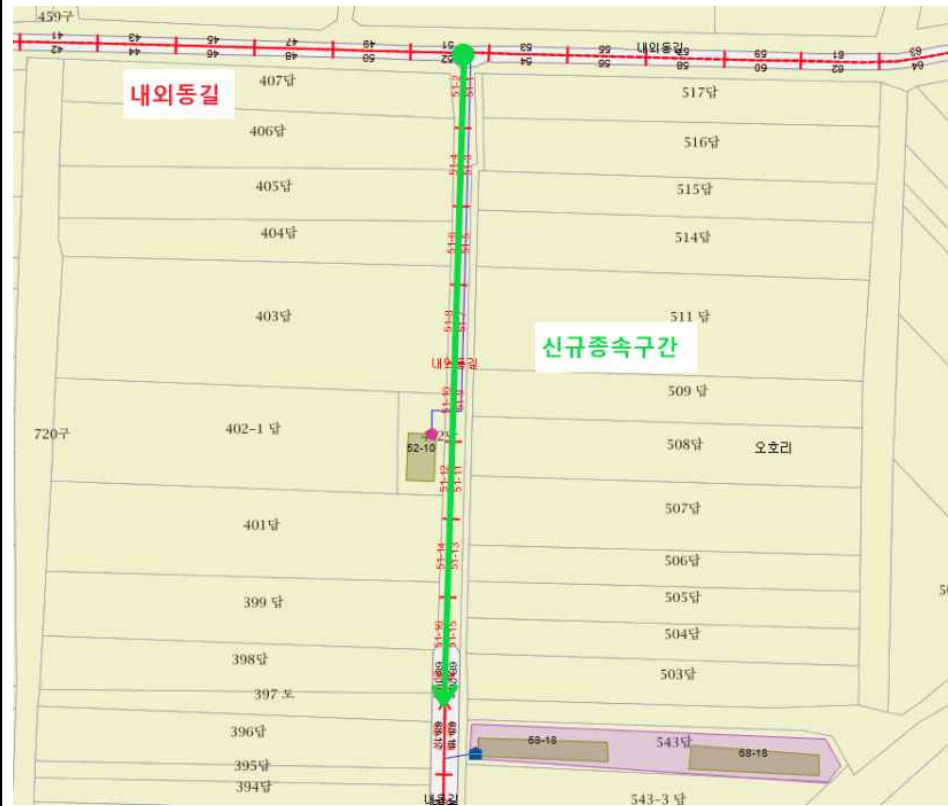
구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 전	내동길	길곡면	오호리 965-4	오호리 156	83.058	7	20	68-1→68-20	도로구간 축소·변경
변경 후			오호리 1473	오호리 717	179	3	20	68-1→68-18	



도로구간 변경 조사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유형	길이(m)	폭(m)	기초번호	고시일(효력발생일)	설정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내외동길	오호리 717	오호리 717	지상도로	165.5	3	51-1→51-18	2024.05.30. (2024.05.30.)	종속구간 신규설정	길곡면

주소정보시스템



항공영상 사진



고 시

창녕군 고시 제2024 - 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창녕군수

- 다 음 -

하천명	점 용 자		점 용 위 치			면 적 (㎡)	목 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읍·면	리	지 번			
중대천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71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	고암면	우천리	138	1	전주 설치 (1주)	2024. 5. 13. ~ 2033. 12. 31.
도평천			고암면	계상리	1596-4	2	전주 설치 (2주)	2024. 5. 10. ~ 2033. 12. 31.
운봉천			성산면	운봉리	922-16	2	전주 설치 (2주)	2024. 5. 13. ~ 2033. 12. 31.
동정천			장마면	신구리	575-2	4	전주 설치 (4주)	2024. 5. 16. ~ 2033. 12. 31.
덕곡천			도천면	덕곡리	1230	1	전주 설치 (1주)	2024. 5. 16. ~ 2033. 12. 31.

창녕군 공고 제2024-962호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창녕군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군세 징수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세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 (안 제2조)
- (현행) 주민세 재산분 ⇒ (개정안) 주민세 사업소분

4.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4조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 2)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전화:055-530-1262, FAX:055-530-127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세정팀(055-530-1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채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를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로, “기준”이란 채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를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으로,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를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로, “경우를”을 “자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란 체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 -----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 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 ----- ----- -----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 ----- -- 자를 -----.</p>

【관 련 법 규】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964호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창녕군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안 제3조, 안 제17조)
 - 가산금 및 증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안 제8조, 안 제14조)
-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결손처분 → 시효완성정리 또는 정리보류(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10호 서식, 안 별지 제9호의2서식)

4. 관련법규

-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55조
- 나.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 2)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전화:055-530-1262, FAX:055-530-127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세정팀(055-530-1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녕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창녕군 규칙 제 호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 를 “시효완성정리” 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갑, 을)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을 “정리보류를” 로, “결손처분 취소액” 을 “정리보류 취소액” 으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을 “정리보류를” 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균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정수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결정결의서</p>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항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군) 구(시·군) 외 명				
적요	년 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징수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 목	세 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세입(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발의일: 년 월 일
알려드립니다. 분임징수관 (인)

세목 []세 /세목구분 [] /군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 수 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대 년 간	대 월 간	대 조 정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 창녕군 합계															
소계															
00세															
00세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일	최초 기한일	가산 기한일	○○세	○○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과 총액
압류 사항	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횟수	물 건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계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읍·면)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납부 지연 가산세 총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총누계	수납 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u>지방세 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u>결손처분</u>) <u>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u></p>	<p>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u>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u> ----- ----- -----.</p> <p>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 ----- ----- <u>납부지연가산세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u>정리보류 등</u>) ① <u>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u></p>

식의 결손처분표(갑,을)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및 별지 제9호서식(갑, 을)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 -----
----- 납부
지연가산세를 -----

-----.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를-----
-----.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징수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margin: 0 20px;">] 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또는 납세고지서부발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군		년	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액	금	원(W)				
납세인원	(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 군 월 분 세		수납부등재	(인)		
			환급금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징수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margin: 0 20px;">] 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또는 납세고지서부발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	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항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결정액				
결정액	금	원(W)				
납세인원	(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 도 월 분 세		수납부등재	(인)		
			환급금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수납구분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수납구분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 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영업 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 군	납 기	과세 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 부 일	납부 기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군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 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영업 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 도	납 기	과세 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 부 일	납부 기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뒤 쪽)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교주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근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 (인)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채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납지연가산세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 (인)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3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과세번호	연군/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정리보류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신 설>

[별지 제9호2서식]

시효 완성 정리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 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납부 지연 가산 세	계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 일자			
채 납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 기한	체납액			결 산 처 분 여 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 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수 (인) 창녕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 일자			
채 납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 기한	체납액			정 리 분 류 여 부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 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수 (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창녕군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윤희정 (☎530-1260)

【관 련 법 규】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삭제 <2020. 12. 29.>

제31조 삭제 <2020. 12. 29.>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부칙 <제17770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 28.>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